

한국주거학회논문집규정 및 부속규정개정

| | | |
|------------------|------------------|------------------|
| 1989. 11. 11. 제정 | 2000. 10. 20. 개정 | 2002. 2. 8. 개정 |
| 2005. 1. 25. 개정 | 2006. 1. 17. 개정 | 2006. 9. 16. 개정 |
| 2008. 9. 8. 개정 | 2009. 11. 13. 개정 | 2010. 4. 16. 개정 |
| 2010. 7. 2. 개정 | 2010. 11. 12. 개정 | 2011. 4. 15. 개정 |
| 2011. 5. 21. 개정 | 2011. 8. 26. 개정 | 2012. 3. 17. 개정 |
| 2015. 3. 21. 개정 | 2015. 12. 19. 개정 | 2016. 11. 18. 개정 |
| 2017. 8. 25. 개정 | 2017. 11. 17. 개정 | 2018. 11. 22. 개정 |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주거학회논문집(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의 투고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투고자 전원이 본 학회 정회원과 준회원이어야 한다.

3. 원고의 접수

- (1) 투고논문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논문집에 이미 게재(게재 예정 포함) 되었거나 다른 기관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학술논문에 한한다.
- (2) 논문접수일은 논문편집위원회가 논문을 수령한 날짜로 한다. 매주 금요일 24:00까지 접수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 (3) 원고는 제출자가 학회 규정에 맞게 편집하여 작성한 논문을 저자명과 소속을 삭제한 pdf파일로 논문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한다.
- (4)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논문인 경우 새로이 발전된 내용과 주제로 구성되었을 경우 각주에 표기 후 투고할 수 있다.

4. 원고 작성

원고작성의 형식에 관하여는 <논문원고작성규정(부속규정 1)>에 따른다.

5. 원고의 수리 및 게재

- (1) 원고의 수리여부는 “논문심사규정(부속규정 3)”에 따라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인간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소속기관 내 생명연구윤리규정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받아 논문 내에 IRB 승인번호 및 관련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 (3) 다음과 같은 원고는 수리하지 않는다.
 -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관계가 없는 것
 - ② 원고작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 ③ 게재 된 후 자진 철회한 논문을 수정하여 1년 이내에 재투고 한 것
- (4) 원고의 게재확정일은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
- (5) 논문 게재는 한 호의 게재 가능편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접수일자 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한국주거학회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전적으로 학회가 갖는다. 이를 위해 논문게재시 저작권 이전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수정 및 교정

원고의 수정 및 교정은 투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의 책임아래 논문편집위원회에서 협조할 수 있다.

7. 논문편집위원회 운영

(1) 목적

논문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2) 구성

- ① 논문편집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장, 논문편집부위원장, 논문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논문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하며, 논문편집부위원장은 논문편집위원 중에서 논문편집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③ 논문편집위원은 논문심사와 편집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관련 분야(주거계획/설계, 주거사, 실내디자인/IT, 환경계획/설비, 주거단지계획, 주거관리/리모델링, 주택건설기술/경영, 주거복지/제도 등)의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전공, 연구업적, 지명도, 지역 및 국제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20명内外를 편집위원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한다. 논문편집위원의 자격은 학회 이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회 정회원도 선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의무와 권한

- ① 논문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제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주거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논문편집위원회는 한국주거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집의 발간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8. 투고료

- (1) 논문 투고자는 투고비 10만원(논문 심사료 및 논문 진행료, 급행의 경우 22만원)을 논문 투고 시 지불한다.
- (2) 투고논문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편당 게재료 140,000원(급행의 경우 220,000원)과 초과료를 논문 제작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쪽수는 8쪽을 기본으로 하며, 14쪽이 최대이고 8쪽을 초과하면 2쪽마다 60,000원의 초과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1쪽, 3쪽, 5쪽 초과는 각각 2쪽, 4쪽, 6쪽 초과에 해당).

9. 발행일

본 학회 논문집은 짹수월 25일에 발행한다.

10. 기타

이상의 논문의 규정, 논문원고 작성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